

## 공정위, 구조조정기의 경쟁정책 추진방향 제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월 18일(수)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독과점의 심화와 같은 문제점에 적극 대응하는 등 모든 경제분야에 있어서의 경쟁과 효율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우리 경제의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하여 나갈 것이라는 내용의 구조조정기의 경쟁정책 추진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엄격히 적용하여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업결합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대규모기업집단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기업결합 등을 통한 독과점의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구조조정 및 이와 관련된 정책의 집행 등에 있어서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며, 모든 경제주체에게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경쟁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98년 상반기 중에 금융 및 기타 산업을 포함한 모든 경제분야에 적용되는 종합적인 기업결합심사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시행할 계획이며, 동 가이드라인에 기업결합 예외인정과 관련된 요건 등도 구체화하여 기업결합심사의 객관성과 신뢰성, 투명성을 보장할 방침으로 있다. 또한 대규모기업집단의 구조조정과 관련된 기업결합에 대하여 그 허용 또는 불허용의 내용과 이유 등을 일반에 공개하고, 대규모기업집단에 매각하는 사업분야에 대하여 국내의 사업자의 동등한 참여기회를 보장하며, 대규모기업집단 계열사간의 채무보증의 조속한 해소를 추진하기 위해 관련 법률 및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경제구조를 경쟁촉진적 시장경제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각종 진입 및 퇴출을 제약하는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공공부문에 있어서의 진입·퇴출 제한을 완화하는 조치를 취해나갈 계

획으로 있으며, 아울러 '97년에 제정된 행정규제기본법에 의거하여 신규규제의 억제와 기존 규제의 정비를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물류·운수, 카르텔 등과 같이 덩어리규제가 많고 국민경제적인 파장효과가 큰 핵심분야에서 진입 및 퇴출규제, 가격규제, 사업활동 규제 등에 대한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전반적인 규제수준의 축소를 위해 체계적·과학적인 규제영향분석을 통해 필요성이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규제의 신설을 허용하는 한편, 기존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별로 존치 필요성을 재검토·정비하되, 존치가 필요한 규제의 경우에도 일정기간 후에는 원칙적으로 폐지토록 하는 규제일몰제를 도입할 계획으로 있다. 공정위는 전력·가스 등 시장독과점적인 공기업에 대해서는 경쟁체제를 도입할 계획으로 있으며, 정부가 직접 공급하는 서비스 중에서 사업적 성격이 큰 분야의 공사화 방안을 검토하는 동시에 효율적인 사업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민간경영기법을 도입하고 전문경영인을 선정하는 방안 등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공기업을 대상으로 경영평가를 실시하여 이를 민영화하거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는 등 각 기관의 특성에 맞게 정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정책의 효율적 추진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정책 집행기능 강화를 위해 산업연구원 이규억 원장을 위원장으로 현재 공정위가 운영중인 「경쟁정책자문위원회」 위원들을 중심으로 관련부처의 전문가 등을 추가하여 「민관합동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거래법령 개정 등 공정거래제도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